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30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해양친수과	담당자 · 연안관리담당 백승훈 ☎458-7151 · 담당자 김희용 ☎458-715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

- 해양공간 특성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
- 선점식 공간 이용·난개발·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문제해결 기대 -

인천시의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양 공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공간관리 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의 해양 공간 이용·개발·보전 계획 등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돼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9개 용도구역: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연구·교육보전, 군사활동, 안전관리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및 군·구 관계부서 설명회(2회)와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2회), 공청회,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1년 9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9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정보/고시

인천광역시 누리집 : www.incheon.go.kr → 인천소식 → 고시/공고/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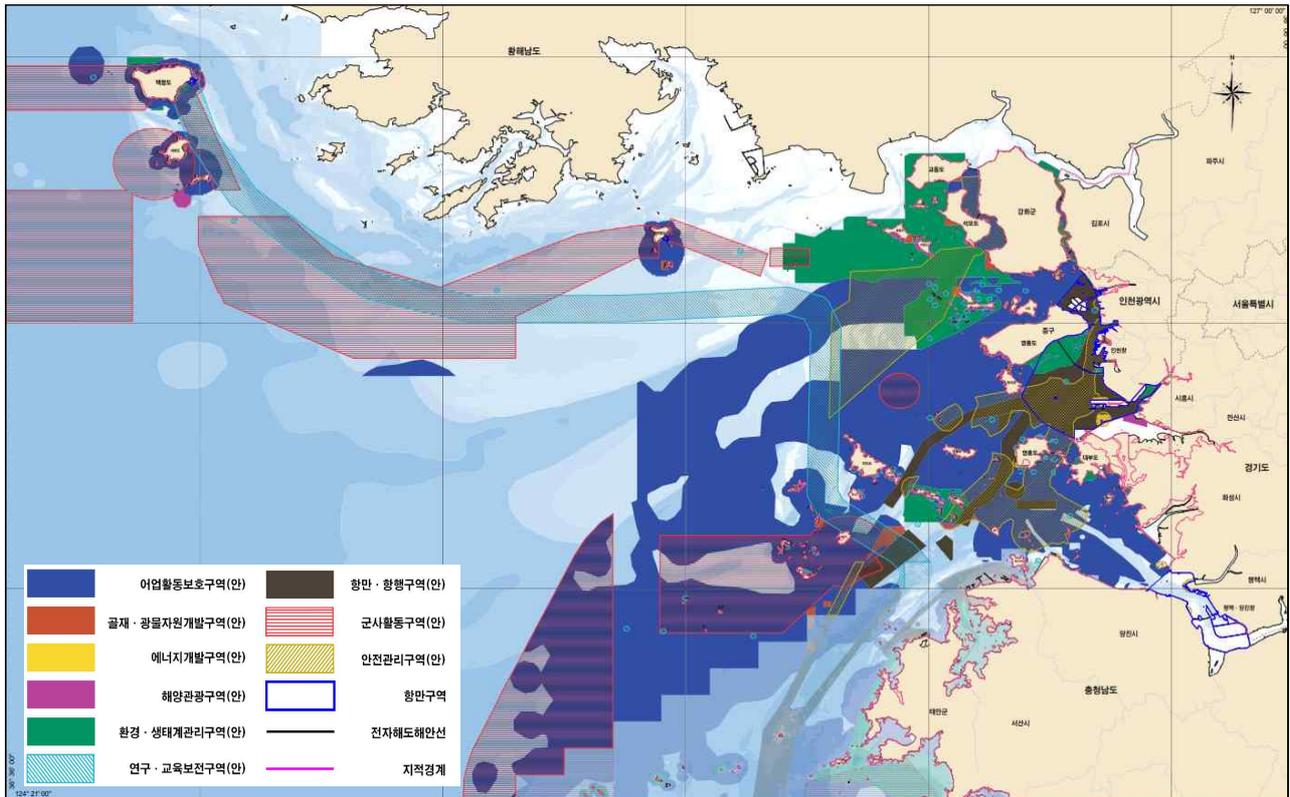
이한남 시 해양친수과장은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용도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 해양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인천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2.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및 추진경과

인천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구 분	면적(km ²)	%
전 체	11,609.73	100.00
1. 어업활동보호	4,630.21	39.88
2. 군사활동*	3,834.22	33.03
3. 연구·교육보전*	1,141.34	9.83
4. 안전관리*	997.7	8.59
5. 환경·생태계관리	733.93	6.32
6. 항만·항행	502.98	4.33
7. 해양관광	42.54	0.37
8. 골재·광물자원개발	36.60	0.32
9. 에너지개발	9.53	0.08
(중복*)	(2,984.74)	(25.71)
소계	8,944.31	77.04
유보해역	2,665.43	22.96

*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가능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및 추진경과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 (법적근거)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수립권자) 해양수산부장관(대륙붕, EEZ, 국가관리 항만구역), 시·도지사(국가관리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
- (주요내용)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 등 특성평가,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 추진경과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4.) 및 시행('19.4.)
- (해수부) 이해관계자 설명 및 의견수렴('19.5.)을 거쳐 관리계획 초안 마련('19.8.)
-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개최('19.12., '20.1. 2회)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6조,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 개최('20.7.)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6항/ 방역조치 감안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20.9.~10.)
-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21.1.)
- (해수부) 지역위원회 심의의견 검토 및 반영('21.2.~4.)
- (해수부) 관계 행정기관(중앙, 지방) 추가 협의('21.4.~8.)
-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21.9.)
- (해수부·인천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21.9.30. 예정)